

2020년 대전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2020년

대전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년 달라지는 대전시정이란?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시책, 법률개정 등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발간된 책자는 구청, 주민센터, 한밭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도서관에 배치되며,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를 통해서도 시민 누구나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1

즐거운 대전

- | | |
|------------------------|----|
| 01 「커플브리지」준공 | 08 |
| 02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조성 | 09 |
| 03 「갑천변 물빛길」조성 | 10 |
| 04 「엑스포기념구역」조성 | 11 |
| 05 「e스포츠 상설경기장(공연장)」구축 | 12 |
| 06 「관저다목적체육관」조성 | 13 |
| 07 「사회인야구장」조성 | 14 |
| 08 「월평도서관」개관 | 15 |
| 09 마을극장「씨네인디유」개관 | 16 |
| 10 「한밭도서관 북카페형 열람실」조성 | 17 |
| 11 「반려동물복지센터」신축 | 1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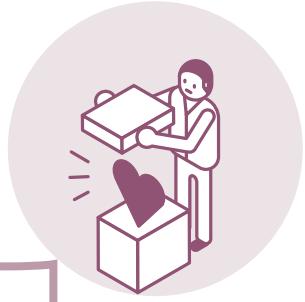
2

함께하는 대전



- | | |
|--------------------------------|----|
| 01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공모사업」100억 확대 시행 | 20 |
| 02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운영 | 21 |
| 03 「시청사 시민몰」조성 | 22 |
| 04 「주민자치회 시범사업」확대 | 23 |
| 05 「공공건축가제도」시행 | 24 |

따뜻한 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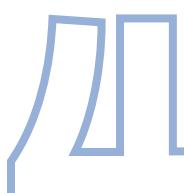


- | | | |
|----|---------------------------------|----|
| 01 | 구직청년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 26 |
| 02 |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 지원 | 27 |
| 03 | 「청년하우스」 조성 | 28 |
| 04 |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 | 29 |
| 05 | 「보육지원체계」 개편 | 30 |
| 06 | 고용취약계층 「복지일자리」 확대 | 31 |
| 07 |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운영 | 32 |
| 08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개편) | 33 |
| 09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상향 | 34 |
| 1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인상 | 35 |
| 1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제도」 신설 | 36 |
| 12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37 |
| 13 | 「복용승마장 장애인 재활승마 프로그램」 운영 | 38 |



- | | | |
|----|------------------------|----|
| 01 |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 40 |
| 02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41 |
| 03 | 「원도심지식산업센터」 개소 | 42 |
| 04 | 「대전디자인센터」 개관 | 43 |
| 05 | 「바이오 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 44 |
| 06 | 「Re-New 과학마을」 조성 | 45 |
| 07 | 「노동자권익상담실」 설치 운영 | 46 |
| 08 |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 4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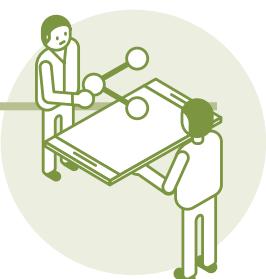
잘사는 대전



5

편리한 대전

01 「바우처 택시」도입	50
02 「수소 저상 시내버스」도입	51
03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	52
04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지원	53
05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 개설」	54
06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 온라인으로 확인	55
07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시행	56
08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개선	57



6

안전하고 깨끗한 대전

01 「대전시민 안전종합보험」시행	60
02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제정	61
03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62
04 「삼성119안전센터」재건축	63
05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 개정	64
06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및 결과보고 기간 단축	65
07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66
0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67
09 「대전천 국가하천」승격	68
10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안내 전화」운영	69
11 「공동주택 미니태양광」보급 확대	70

2020년

대전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즐거운 대전



01 「커플브리지」준공	08
02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조성	09
03 「갑천변 물빛길」조성	10
04 「엑스포기념구역」조성	11
05 「e스포츠 상설경기장(공연장)」구축	12
06 「관저다목적체육관」조성	13
07 「사회인야구장」조성	14
08 「월평도서관」개관	15
09 마을극장「씨네인디유」개관	16
10 「한밭도서관 북카페형 열람실」조성	17
11 「반려동물복지센터」신축	18

01 「커플브리지」준공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전천 동측과 서측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결하는 보도교를 건설하여 청소년과 청년층의 문화를 반영한 공간 조성으로 원도심 활성화



▲위치도



▲조감도



사업개요

| 위치 | 중구 대전천서로 415 일원(종교 ~ 대흥교 사이)

| 사업량 | 보도교 건설(L=83m, B=4~6m)

| 공사기간 | 2019. 3. ~ 2020. 3.

| 사업비 | 3000백만원(국·시비 50%)

기대효과

- 젊은 세대의 문화를 반영한 공간으로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부각
- 주변 관광자원(스카이로드, 청년구단 등)과 연계하여 집객효과 극대화

도시재생과 ☎ 042-270-6283 / 준공예정 2020년 3월

02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조성



무엇이 달라지나요?

중구 안영동에 시민의 건강 증진과 전국 규모 대회 유치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활체육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

※ 1단계 사업(축구장 5면) : '20. 4월 완공



사업개요

|위 치| 중구 안영동 400번지 일원

|규 모| 부지면적 164,545m²(1단계 88,903m² / 2단계 39,625m² / 3단계 36,017m²)

|사 업 비| 1,098억원(보상비 710, 공사비 321, 부담금 등 67)

|사업내용|

1단계(사업비 677억원)

- 축구장(5면), 진입도로(126m)
- 주차장(2개소/234면)
- 사업기간 : '15 ~'20년

2단계(사업비 265억원)

- 테니스장(22면)
- 배드민턴장(20면)
- 사업기간 : '20 ~'21년

3단계(사업비 156억원)

- 스포츠콤플렉스
- 다목적구장
- 사업기간 : '22 ~'23년

기대효과

-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질 높은 생활체육 공간 확보
- 전국 규모 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체육진흥과 ☎ 042-270-4483 / 준공예정 2020년 4월

03 > 「갑천변 물빛길」조성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덕대교에서 둔산대교 구간의 교량 및 갑천 둔치에 야간경관조명 설치와 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



▲위치도



▲조감도

사업개요

- | 위치 | 대덕대교~한빛대교~둔산대교
- | 사업량 | 대덕대교에서 둔산대교 구간에 경관조명 설치(교량, 둔치 등)
- | 공사기간 | 2020. 3. ~ 2020. 12.
- | 사업비 | 1,900백만원(시비 100%)
※ '대전의 빛' 3대 하천 야간경관 활성화사업 단기사업(19~'21)으로 추진

단계별 추진계획

- 단기(19~21) : 갑천 물빛길 조성사업, 탄동천, 별빛이 내리는 밤 / 65억
- 중기(22~24) : 한빛대교, 대전천(대흥교~선화교) / 24억
- 장기(25~28) : 갑천누리길(갑천대교~대덕대교), 유등천(가장교~유등교) / 34억

기대효과

- 과학도시 대전에 걸맞은 새로운 야간경관 조명 설치로 지역 명소화
- 갑천 수변을 이용한 야경 볼거리 및 시민 여가 공간 제공

도시경관과 ☎ 042-270-6433 / 2020년 3월 착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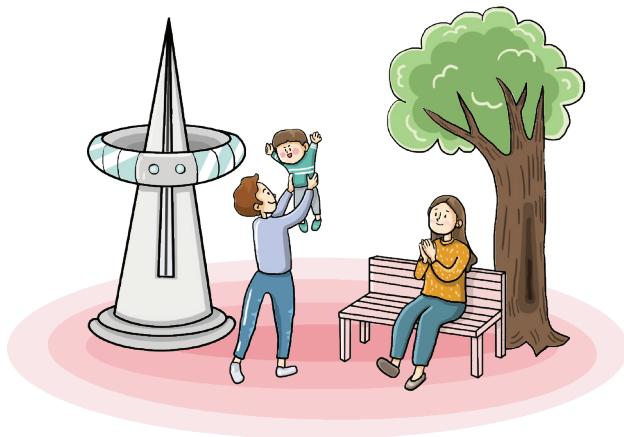
04

「엑스포기념구역」조성

무엇이 달라지나요?

한빛탑광장을 대전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와 시민의 여가·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한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

※ 1단계 사업 : '19. 12월 완공



▲조감도

사업개요

|위 치| 엑스포과학공원 한빛탑 일원(유성구 도룡동)

|규 모| 부지면적 120,161m²

|사 업 비| 260억원(신세계 기부채납 및 자료수입 활용)

|사업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 음악분수(미러), 관람시설	• 한빛탑 및 주변공간 개발	• 한빛탑 북측 공원조성
• 대형 전시·이벤트광장 조성 등	• 미디어파사드, 관람시설 등	• 기념구역 빛 축제장 조성 등
• 사업기간 : '18 ~'19년	• 사업기간 : '19 ~'20년	• 사업기간 : '20 ~'21년

기대효과

- 한빛탑 일대를 재조성하여 '93 엑스포의 상징성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문화·이벤트 공간을 마련함
- 불거리로 외래방문객을 유치하고 시민에게는 여가공간을 제공함

05 「e스포츠 상설경기장(공연장)」구축

무엇이 달라지나요?

첨단기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과학도시 대전에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위한 e스포츠 상설 경기장(공연장)을 조성하여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상징성 확보

※ 2019년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



사업개요

기 간	2019. 5월 ~ 2020년 8월
위 치	엑스포과학공원내 첨단과학관 (유성구 도룡동 3-1)
규 모	2,927m ² (첨단과학관 북관 전체)
사 업 비	74.5억원(국비 30, 시비 44.5)
공간구성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인터넷게임시설, 아카데미실, 팬미팅실, 부대시설 등

기대효과

- e-스포츠 산업 육성 및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으로 콘텐츠산업발전
- 중부권 최고의 e-스포츠상설경기장(공연장)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콘텐츠과 ☎042-270-3881 / 준공일 2020년 8월

06 「관저다목적체육관」조성



▲조감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서구 관저체육공원에 관저다목적체육관이 건립되어 2019년 12월말 개관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업개요

위 치	서구 관저중로 10(관저체육공원내)
기 간	2017. 9. 22. ~ 2019. 10. 22.
규 모	연면적 4,906.8m ² (지하2층, 지상3층)
사 업 비	9,700백만원(기금 2,720, 시비 3,490, 구비 3,490)
주요시설	수영장(25m, 6레인), 다목적체육관, 주차장(109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9,700	1,360	1,360	5,690	1,290
국 비	2,720	1,360	1,360	0	0
시 비	3,490	0	0	3,000	490
구 비	3,490	0	0	2,690	800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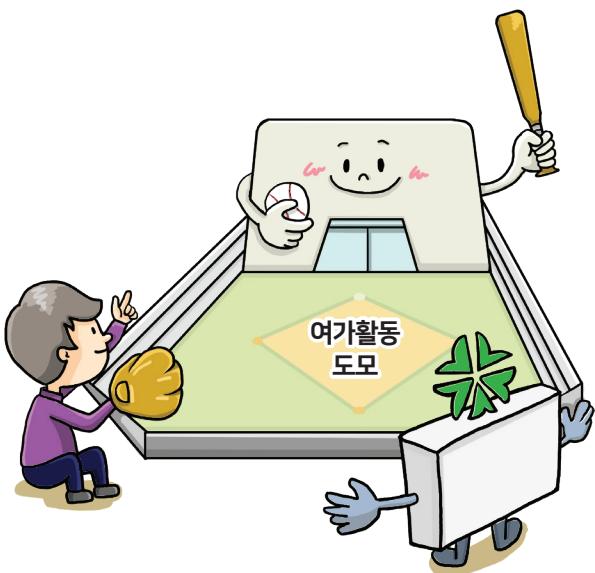
- 체육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 도모
- 관저체육공원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체육진흥과 ☎ 042-270-4484 / 개관일 2019년 12월 23일

07 「사회인야구장」조성

무엇이 달라지나요?

하천, 하수종말처리장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사회인 야구장(4면) 조성으로 사회인야구 참여 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 도모



사업개요

갑천고수부지 야구장

|위 치| 유성구 탑립동 7번지 일원 / 한빛대교 상류 우안
|규 모| 야구장 2면 / 간이야구장 1, 어린이야구장 1

|사업내용| 부지조성, 덕아웃, 백스탑, 안전펜스 등

|사 업 비| 2억원

대전하수처리장 야구장

|위 치| 유성구 문지동 66번지 / 상록체육공원
|규 모| 야구장 2면 / 간이야구장 1, 어린이야구장 1

|사업내용| 부지조성, 덕아웃, 백스탑, 안전펜스 등

|사 업 비| 2억원

기대효과

- 하천 등 유휴공지를 활용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생활체육 참여 확대
- 사회인 야구장 확충으로 시민건강 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 도모

08 「월평도서관」 개관

무엇이 달라지나요?

갈마공원내 「월평도서관」 개관으로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제공



사업개요

- | 위치 | 서구 갈마동 820번지(갈마공원 내)
- | 사업규모 | 지하1 ~ 지상3층, 연면적 3,584.76m²
- | 주요시설 | 보존서고, 어린이 자료실(유아자료실, 이야기 방), 북카페, 도서정보실, 시청각실, 문화교실 등
-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 | 사업비 | 9,800백만원(국비 3,920, 시비 2,940, 구비 2,940)
- | 개관 | 2019년 12월 17일

기대효과

도심지내 공공도서관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 증진

문화예술정책과 ☎042-270-4441 / 개관 2019년 12월

09

마을극장「씨네인디유」개관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민의 독립·예술영화 향유기회 제공 및 문화접근성 강화를 위한 마을극장「씨네인디유」개관
※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



사업개요

- | 기 간 | 2019. 5월 ~ 12월
- | 위 치 | 대전 중구 계백로 1712, 기독교연합봉사회관 1층
- | 좌석 수 | 72석 (장애인석 4석 포함)
- | 사 업 비 | 5억원 (시비 4.5억원, 민간 0.5억원)
- | 공간구성 | 스크린 (6m×8m×4.3m), 4K급 영사시스템

기대효과

일반 상업영화에 비해 다소 소외된 독립·예술영화의 문화접근성을 강화하고, 독립·예술영화 제작 저변확대를 통한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

문화콘텐츠과 ☎042-270-3891 / 개관일 2019년 11월

10

「한밭도서관 북카페형 열람실」조성

한밭도서관 북카페형 열람실이란?

기존의 딱딱하고 획일적인 구성의 열람실이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카페처럼 편안하고 안락하며 다양한 기능을 구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 됨

※ 리모델링 착공일 : '20년 6월 착공 예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기존의 서가 구성을 일반 서점에서 사용하는 낮은 서가로 변경 신간도서, 북큐레이션 등의 다양한 코너들을 마련, 이용자들이 원하는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
- 1인 좌석, 단방향 좌석, 소파 등 다양한 좌석형태를 마련하여 편안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독서 및 학습이 가능

사업개요

위 치	중구 서문로 10
규 모	한밭도서관 3층 전체 2,725m ²
사 업 비	4,588백만원(시비 3,588, 국비 1,000)
사업내용	북 카페식 개방형 열람 공간으로 리모델링

기대효과

- 새로운 개념의 복합문화공간 창출로 시민들의 독서문화향유 경험 확대
- 아이디어 창출 및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는 정보플랫폼의 역할 수행

자료운영과 ☎042-270-7486 / 준공일 2020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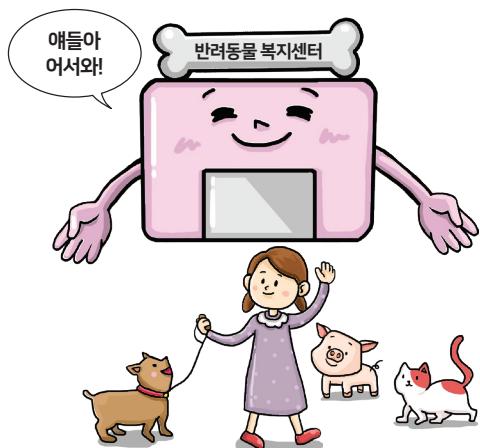
11

「반려동물복지센터」신축

무엇이 달라지나요?

선진 동물보호·복지 시스템 확충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복지센터」 조성

※ 준공예정 : '20. 12월



▲조감도

사업개요

|위 치| 유성구 금고동 583번지 일원

|규 모| 대지 4,000m², 건축물 2,009m²

|사 업 비| 5,414백만원(국비 1,600, 시비 3,814)

|주요시설| 동물보호시설, 동물병원, 입양지원실, 동물운동장 등

|추진현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동물보호센터 신축 허용)
- 반려동물복지센터 신축계획 수립

'15 ~ '16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 국비확보 (16억)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17 ~ '18

- 건축 인허가 완료
- 업체 선정 및 토목공사 착수

'19.

- 분야별 공사 추진
- 공사 준공

'20.

기대효과

- 유실·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선진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공감대 조성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농생명정책과 ☎042-270-3822 / 준공일 2020년 12월

2

함께하는 대전



- | | |
|--------------------------------|----|
| 01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공모사업」100억 확대 시행 | 20 |
| 02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운영 | 21 |
| 03 「시청사 시민몰」조성 | 22 |
| 04 「주민자치회 시범사업」확대 | 23 |
| 05 「공공건축가 제도」시행 | 24 |

01

「주민참여예산 시민제안공모사업」 100억 확대 시행

시민제안 공모사업이란?

시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제도로 협치심의회 숙의과정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평가와 시민투표의 과정을 통해 선정되는 사업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 사업규모 / 30억원	• 사업규모 / 100억원
• 사업유형 / 소규모 밀착형 사업	• 사업유형 /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동 지역회의 지원사업형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19. ~ 2022. / 시민제안공모사업(계속사업)
- | 사업비 | 100억원 / 단계별 확대 추진
- | 사업규모 | ('19년) 30억원 → ('20년) 100억원 → ('21년) 150억원 → ('22년) 200억원

기대효과

- 예산과정에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 하여 예산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편의사항 추진으로 만족도 제고

자치분권과 042-270-0543 / 시행일 2020년 1월

02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운영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존 시민참여제도

- 국민제안, 공청회, 시장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 위원회 등 운영
- 국민제안은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시스템과 연계되는 전국단위의 국민의견 수렴창구로 자율적 운영이 어려움
- '시장에게 바란다' 등은 일방적 시민제안으로 다수의 시민과 숙의의 과정을 만들어 내기에는 소통의 폭이 다소 좁음.

추가 시민참여제도

- 시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해서 제안, 토론, 설문, 투표, 정책실현 등이 가능한 진정한 시민참여 정치를 구현하는 '대전시소' 운영
- 시민의 일방적 정책 제안이 아닌 대전시와 시민간의 소통, 그리고 시민과 시민 사이의 공론이 가능한 구조로 확장
- 24시간, 365일 쉼 없이 소통하는 쌍방향 온라인 공론의 장 마련



사업개요

- | 사업명 | 시민참여 정책제안 플랫폼 '대전시소'
- | 사업기간 | '18.8.~'20.1.(플랫폼 오픈) / 시범운영('19.5.~'19.12.)
- | 사업내용 | 제안(시민제안, 대전시 제안) / 토론 / 결과 공개의 3단계 구조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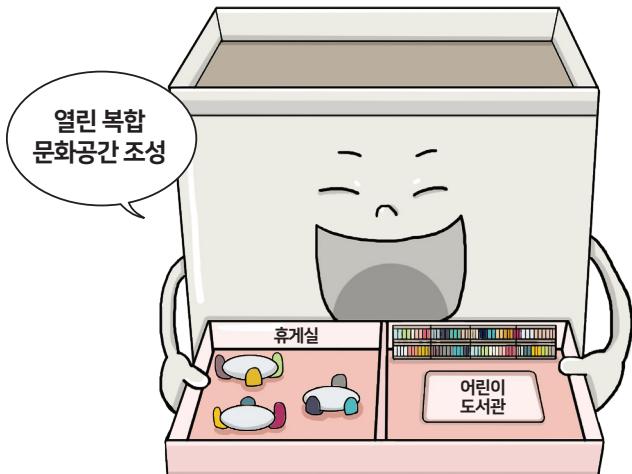
- 시민이 제안부터 정책 결정, 실행까지 모든 영역에 참여 가능
- 사이버 공간에서 시·공간적 제약 없이 격의없는 소통의 장 마련

자치분권과 ☎ 042-270-0542 / 시행일 2020년 1월

03 > 「시청사 시민몰」조성

무엇이 달라지나요?

시민 중심의 청사 공간 배치를 통해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청사 조성



사업개요

- |위 치| 시청사 1~3층 및 20층
|기 간| 2019년 1월 ~ 2020년 6월
|사 업 비| 18.6억원(사업비 17, 설계비 1.6)
|사업내용|

시민몰 조성 : 1·2층에 시민 참여·소통형 복합문화휴게 공간조성

☞ 1층은 홍보·참여공간 조성 및 개방감 확보

☞ 2층은 복합문화휴게 공간으로 어린이도서관, 건강카페 등 시민 문화휴게 공간 조성

기대효과

- 시민 참여 및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열린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
- 시청사 내 비효율적 공간 재배치로 이용편의 등 효율성 제고

운영지원과 ☎042-270-0611 / 준공일 2020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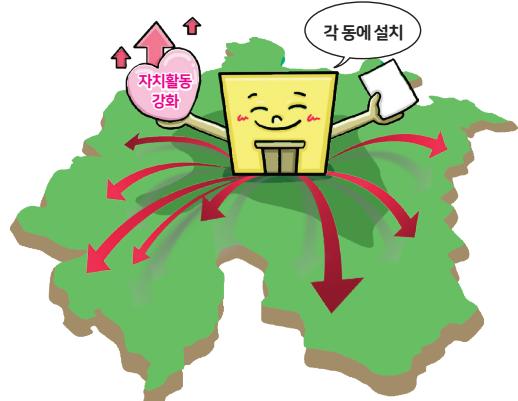
04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주민자치회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

※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협의 권한, 일부 동 업무 수탁처리 권한, 자치업무 수행권한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구 8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 : 가양2 - 서구 : 갈마1 - 유성구 : 진잠, 원신흥, 온천1 - 대덕구 : 송촌, 중리, 덕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구 13개동 추가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구 : 가양2, 용전 - 서구 : 갈마1, 도마1, 도마2, 월평2 - 유성구 : 진잠, 원신흥, 온천1 - 대덕구 : 송촌, 중리, 덕암, 오정, 대화, 회덕, 비래, 법1, 법2, 신단진, 석봉, 목상 |
|--|--|

사업개요

|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기반 마련

- 시범조례 제·개정
- 자치구실행계획 수립
- 동장 직위공모
- 전담인력 배치

'20.1~6(6개월)

주민자치회 구성

- 주민설명회 개최
- 위원모집·홍보
- 주민자치학교 운영
- 위원위촉, 임원선출

'20.7~12(6개월)

자치계획 수립

- 자치규약 제정
- 분과 구성 및
- 분과별 자치계획 수립
- 주민총회 개최

'21.1~7(7개월)

자치계획 실행

- 분과별 사업집행
- 市주민참여예산 반영
- 평가 및 차년도 계획 수립

'21.8~12(5개월)

| 재정지원 | 1개동 기준 2년간 103백만원(특교금)

-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사업비, 사무공간 조성비, 간사 활동비 등

기대효과

- 풀뿌리 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인 주민자치회 확산에 기여
- 동 단위 마을현안을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

자치분권과 ☎ 042-270-0515 / 사업기간 2020년 ~ 2021년

05 「공공건축가 제도」 시행



공공건축가 제도란?

공공건축(공간환경 포함)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역량 있는 전문가 참여로, 공공 건축 수준향상 및 시민중심 도시공간 창출을 위한 민간전문가 참여제도

※ 공공건축, 지역개발(도시재생 등)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 및 조정·자문 실시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20년 3월 ~

| 민간전문가운영 | 총 50명 (건축·도시·조경 분야 전문가)

- 총괄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49명(수석2, 중진20, 신진27)

| 적용대상 |

-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주요 공간정책 및 공공건축(건축물·공간환경) 사업

| 자문시기 | 주요사업 기획(구상) 단계부터 주요 기본계획 수립 전·후

| 주요내용 |

- 총괄건축가 : 지역 주요 공간정책·전략계획 및 주요사업 총괄·조정·자문

- 공공건축가 : 개별 공공사업의 기획, 시공·유지관리 전과정 일관되게 관리

| 운영방법 |

- 총괄건축가 : 주요 공간정책 및 사업의 기획 등 총괄·조정·자문(소관부서 요청시)

※ 공공건축(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 공공건축가 : 부서 요청시 사업별 전담 공공건축가 추천·지정(공공건축가)

기대효과

- 사업초기 기획업무 미숙에 대한 전문성 강화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 사업집행
- 지역특색에 맞는 공공건축물을 조성하여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자산으로 활용

도시경관과 ☎ 042-270-6431 / 시행일 2020년 3월



- | | | |
|----|--------------------------------|----|
| 01 | 구직청년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 26 |
| 02 |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지원 | 27 |
| 03 | 「청년하우스」조성 | 28 |
| 04 |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운영 | 29 |
| 05 | 「보육지원체계」개편 | 30 |
| 06 | 고용취약계층 「복지일자리」 확대 | 31 |
| 07 | 「노인일자리사업」확대 운영 | 32 |
| 08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운영(개편) | 33 |
| 09 | 「문화누리카드」지원금 상향 | 34 |
| 10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인상 | 35 |
| 11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제도」 신설 | 36 |
| 12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제도」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37 |
| 13 | 「복용승마장 장애인 재활승마 프로그램」 운영 | 38 |

5

따뜻한 대전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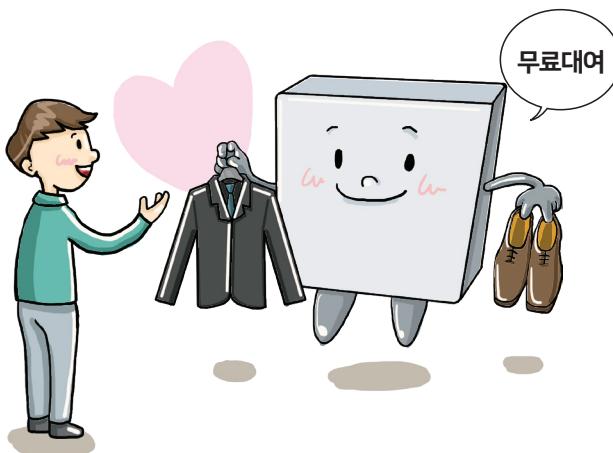
구직청년에게 면접용 정장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0년부터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구직청년(18~39세)에게 면접용 정장과 구두 등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요?

청년의 실업률 증가와 취업 준비 기간의 장기화로 청년들에게 소요되는 구직과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39세 청년 구직자
- | 대여방법 | 면접 증빙자료 첨부, 대여예약 → 대여승인 → 대여업체 방문 → 대여(3박4일) → 반납 → 대여비 청구 및 지급(市 ↔ 대여업체)
- | 연 인 원 | 800명 / 1인 연간 3회까지 이용가능(1회당 5만원)
- | 소요예산 | 60,000천원 / 2020년 주민참여예산

기대효과

- 취업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정보 공유
-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 도움으로 취업률 제고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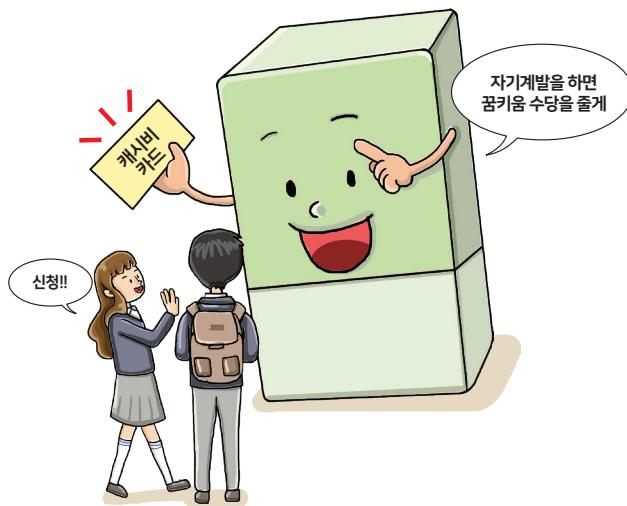
지원근거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17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02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 지원

학교 밖 청소년 꿈 키움 수당이란?

우리 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자기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간접비용을 수당으로 지급
(청소년증 교통카드 기능 / 캐시비카드)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수당 지급 요건 충족자

-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9세 ~ 만 17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중
-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구 센터 포함)에 등록하여 1개월 이상 된 자로,
- 1개 프로그램 이상을 1주일 당 2회 이상 이용하며 꿈 키움 수당 지원신청서 제출 및 분기별 1:1 사례관리에 참여하는 청소년

| 지원금액 및 방법 | 청소년증(교통카드 기능/캐시비카드) 포인트 지급

- 만 9세 ~ 만 12세 (2008~2011년생) : 월 5만원 상당
- 만 13세 ~ 만 17세 (2003~2007년생) : 월 10만원 상당
- 매월 1일 포인트로 개인별 카드에 해당 금액 충전

| 사용범위 | 교통비 (시내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등) 및 캐시비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용처 (식·음료 구입 가능)

기대효과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자립을 위한 다양한 경로의 진로탐색 기회 제공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복지 실현

교육청소년과 ☎ 042-270-0872 / 시행일 2020년 1월(수당지급은 3월부터)

03 > 「청년하우스」조성

무엇이 달라지나요?

유성구 도룡동에 청년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관내 중소·벤처·연구소 기업의 근로자 숙소 부족난 해소를 위해 청년하우스 조성

※ 기존 외국인기숙사 '누리관' 리모델링



사업개요

위 치	유성구 엑스포로 97번길 103
규 모	지하1층 ~ 지상10층 / 226실 / 연면적 7,043m ²
사 업 비	총 8,293백만원(시설비 4,351, 자산취득비 3,942)
사업내용	

시설개선공사

- 숙소(226실) 전체 리모델링
(화장실, 냉난방기, 등기구, 창호, 마감재 등)
- 건물 내·외벽 도색, 바닥 왁싱
- 전기인입공사
- 사업기간 : '19. 1. ~'20. 8.

커뮤니티공간 조성 공사

- 건물 내 공용공간 11개실 리모델링
 - 공유라운지, 공유주방, 헬스장, 스터디룸, 회의실 등 조성
- 사업기간 : '20. 1. ~'20. 8.

기대효과

- 청년의 지역정착 유도 및 삶의 질 향상
- 관내 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및 애로사항 해소

04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

무엇이 달라지나요?

배움의 시기를 놓친 시민들을 위한 학력인정 학교신설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교육대상	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중학교 졸업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 소지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모집인원	주간 120명 / 4학급 야간 60명 / 2학급	주간 140명 / 4학급 야간 70명 / 2학급
학비	전액 무료	분기별 수업료 및 기타비용 학습자 부담
교육기간	2년(6학기)	2년(6학기)

학생모집은 언제하나요?

학습자 모집 및 학사일정

- 2019년 12월 학습자 모집 공고
- 2020년 1월 원서접수 및 접수
- 2020년 2월 학습자 선정 및 발표

※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개요

- | 위치 | 동구 동대전로144번길 47
- | 시설개요 | 토지 6,476.1m², 건물 지상3층, 연면적 4,740.8m²
- | 사업비 | 운영비 17억원(시·교육청 공동부담) ※ 자체수입(수업료) 4억원
- | 운영주체 | (재)대전평생교육진흥원

기대효과

배움의 시기를 놓친 시민들의 평생학습을 통한 자아실현과 학력인정으로 삶의 질 향상

05 「보육지원체계」개편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보육과정(7:30~19:30) 운영 종일반(7:30~19:30)과 맞춤반(9:00~15:00)으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보육(9:00~16:00)과 연장보육(16:00~19:30)으로 구분 모든 아동에게 동일 보육시간 보장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연장보육료 지원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



사업개요

- 기본보육(9:00~16:00)과 연장보육(16:00~19:30)으로 구분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및 연장보육료 지원
- 자동전자출결시스템 설치 및 운영

기대효과

-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과 근무환경 개선
- 부모가 필요한 보육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
- 전담교사 배치로 영유아에게 정서적 안정감 제공

가족돌봄과 ☎042-270-0697 / 시행일 2020년 3월

06

고용취약계층 「복지일자리」 확대

「복지일자리」란?

노인·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인 삶 지원 및 복지 안전망 구축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27개 사업 25,722개	28개 사업 30,000개



사업개요

사회서비스일자리

- 서비스투자사업
- 자활근로사업 등

5,400개

노인분야

- ▶ 노인사회활동지원
- 꿈나무지킴이
- 시니어클럽 운영 등

18,000개

장애인분야

- ▶ 장애인복지일자리
-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 직업재활 등

6,000개

보건의료 등

- ▶ 통합건강증진
- 치매안심센터 등

600개

기대효과

고용취약계층 기본소득 보장으로 탈빈곤 지원

07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운영

「노인일자리사업」이란?

사회활동 희망 어르신 대상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창출과 노인복지 향상 기여 및 노인 삶의 질 향상 도모



구분	종 전	변 경
노인일자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 16,000개 • 사업기간 : 공익활동 9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량 : 18,000개 • 사업기간 : 공익활동 10~12개월

사업개요

| 참여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시장형+사회서비스형 60세이상

※ '19년 노인일자리 사업량 : 16,458명(공익활동 16,565, 시장형 2,411, 사회서비스형 482)

| 사업유형 및 근무조건 |

구분	내 용	근무조건
공익활동	노노케어(독거노인·조손가정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 경륜전수 활동 등	월 30시간 / 월 10일 (일 3시간 이내)
사회서비스형	취약계층 지원 시설(지역아동센터·장애인시설 등) 및 돌봄시설 지원	월 60시간 / 월 20일 (일 3시간 이내)
시장형	공동작업장, 제조·판매형(지역영농사업), 서비스 제공형(택배·세차사업 등)	사업장별 기준 적용

모집·선발

| 모집기관 |

- 공익형 : 수행기관 또는 구에서 통합모집 선발
- 시장형/인력파견형 : 수행기관별로 공개모집

| 선발방법 | 선발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대상중 희망자 우선

기대효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생활보장 및 복지증진 도모

08

「노인맞춤돌봄서비스」운영(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주간보호 서비스, 안전확인, 말벗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노인돌봄 관련 4개 사업
(기본·종합·단기기사·사회관계활성화)

변 경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운영

사업개요

| 사업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가구 노인, 신체·인지기능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

| 사업내용 | 어르신 상태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 계획 수립

직접서비스

안전확인, 말벗, 가사활동, 식사,
병원·외출동행, 생활교육, 사회참여 유도

연계서비스

보건·복지서비스 등 타 서비스,
민간후원 등 연계

| 서비스 흐름 |

신청서 제출
(거주지 주민센터)

본인·가족

방문조사

17개 수행기관
(사회복지사)

승 인

구 청

돌봄 서비스제공

생활지원사

기대효과

- 대상자별 서비스 중복·누락 최소화 및 접근성 확보로 사업운영 효율화 증진
- 대상자 욕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기요양(고비용)진입 예방

09

「문화누리카드」지원금 상향

문화누리카드란?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예술,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

구분	종 전	변 경
지원금액	지원금액 : 연간 8만원	지원금액 : 연간 9만원



사업개요

- | **지원대상** | 6세(2014.12.31.이전 출생자)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신청자 (예산범위내 우선 신청자)
- | **지원금액** | 1인 1카드, 1인당 연간 9만원 지원 ※ 동일세대 합산 이용 가능
- | **이용기간** | 카드발급일 ~ 12. 31.(카드발급 : '20. 2. ~ '20. 11.)
- | **사용처** | 공연·영화·전시관람, 국내여행,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관람, 문화·체육·관광 분야

신청방법

- | **발급(신규)** | 대상자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mnuri.kr)에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등) 본인 인증 후 신청
- | **재 충 전** | 1544-3412 전화연결후 자동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 2015년 이후 발급 된 카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대상자만 가능

기대효과

- 문화 소외계층인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

문화예술정책과 ☎ 042-270-4416 / 시행 2020년 2월

1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인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설 종사자들이 만족하고 일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처우개선을 위한 보수수준 향상 지원 시책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정액급식비 : 3만원(월)

정액급식비 : 5만원(월)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및 조례

| 시행 일 | 2020년 1월부터

| 지원내용 |

구분	지원대상	지원액
정액급식비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958명	월 5만원

기대효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

복지정책과 ☎ 042-270-4621 / 시행일 2020년 1월

1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제도」신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휴가제도란?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설 종사자들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제공하기 위한 시책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근속휴가 : 재직5년이상~30년이상 근속자 • 자녀돌봄휴가 : 연간 2일 범위 내 휴가 • 보육 휴가 : 연간 5일 범위 내 휴가

사업개요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및 조례|

| 시 행 일 | 2020년 1월부터

| 지원내용 |

구 분	내 용	대 상
장기근속휴가	소속기관 재직 5년 이상 근속자에게 재충전 기회제공 - 5년이상~10년미만(5일), 10년이상~20년미만(10일), 20년이상~10년미만(10일), 30년이상(10일)	
자녀돌봄 휴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재학중인 자녀가 있는 종사자에게 연간 2일 범위 내 사용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3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육휴가	만4세 이하 자녀를 둔 종사자에게 연간 5일 범위 내에서 휴가	

기대효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일과 휴식이 있는 균무환경 개선

복지정책과 ☎042-270-4621 / 시행일 2020년 1월

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제도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보장 수준 이하의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

재산종류	소득환산율(기존)	소득환산율(변경)
주거용재산(임차보증금 또는 주거용주택 1채)	월 1.04%	월 1.04%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	월 4.17%	월 2.08%

※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을 기준으로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수준도 함께 고려하는데, 이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고 합니다.

※ 생계 및 의료급여 신청자에게 적용, 교육급여(15.7월)·주거급여(18.10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사업개요

| 신청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2020년 기준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생계급여(중위 30%)	527,158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의료급여(중위 40%)	702,878	1,196,792	1,548,231	1,899,670	2,251,108	2,602,547
주거급여(중위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교육급여(중위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

13

「복용승마장 장애인 재활승마 프로그램」 운영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장애인 승마체험 위주로 운영

변 경

행동 및 신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승마 서비스 제공
☞ 사회적 약자 배려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개설 추진



재활승마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말이라는 동물을 매개로 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개요

- | 운영횟수 | 매주 2~3회 이상
- | 대 상 | 장애인(지적·뇌병변·자폐성 장애인 등)
- | 운영인력 | 재활승마치료사 등 5명
- | 사 업 비 | 60백만원(한국마사회 지원금 활용)

기대효과

장애인에게 승마를 통해 신체활동 강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

복용승마장운영팀 ☎042-610-2973 / 시행일 2020년 3월



잘사는 대전



- | | |
|---------------------------|----|
| 01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 40 |
| 02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 41 |
| 03 「원도심지식산업센터」 개소 | 42 |
| 04 「대전디자인센터」 개관 | 43 |
| 05 「바이오 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 44 |
| 06 「Re-New 과학마을」 조성 | 45 |
| 07 「노동자권익상담실」 설치 운영 | 46 |
| 08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 47 |

01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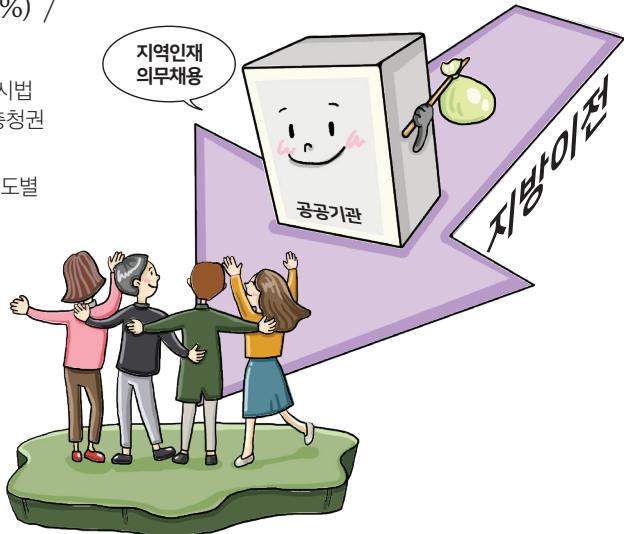
- 혁신도시법 개정('18.1.25.)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2022년부터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적용(매년 순차적으로 증가 최대 30%)
- 2018년 전국 12개 시·도로 이전한 153개 공공기관 중 109개 기관에서는 6,076명의 채용 인원 중 1,423명을 지역인재로 채용

무엇이 달라지나요?

- 「혁신도시법」 개정('19.10.31.)으로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 단계적 적용(최대 채용인원의 30%) / '20.5월 이후

※ 지역인재 의무채용 충청권 광역화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 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 충청권 4개 시·도 소재 51개 기관으로 확대

※ 지역인재 의무채용 최대 비율은 30%이나 연도별 비율은 법 시행 시점 확정



사업개요

지역인재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17개 공공기관(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기대효과

- 혁신도시법 시행 전과 이후 개별 이전 17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 청년 인구 지역 내 정주증가를 통해 인구유출 방지 및 경제 활성화

02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유성구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둔곡지구에 84,446㎡의 외국인 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외투유치 기반확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 입주 : '20. 6월 예정



▲조감도

사업개요

|위 치| 유성구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둔곡지구 산업13, 16블럭

|규 모| 84,446㎡

|사 업 비| 382억원(토지매입비)

|사업내용|

- 외자유치를 위해 토지매입가 이상 외투 시 토지임대료를 년간 토지매입가의 1%를 받고 50년간 임대(10년마다 갱신)
- 입주기업에는 국세,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 입주기업 요건 : 외투기업(외투 1억원 이상, 외국인투자지분 10%이상)이고 외국인투자지분이 30% 이상인 기업
- 신성장산업 등 첨단기업의 경우 추가 인센티브 부여

기대효과

-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기반 확충
- 외자와 첨단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과 ☎ 042-270-3756 / 고시예정일 2020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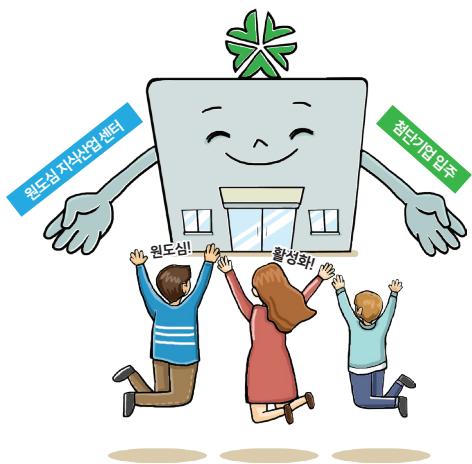
03

「원도심지식산업센터」 개소

무엇이 달라지나요?

동구 대동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 개소하여 40여 개의 첨단 기업을 입주시켜 원도심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개소 : '20. 5월 예정



▲조감도

사업개요

위 치	동구 계족로 143-23 일원
규 모	15,386m ² / 지하2층, 지상7층 / 부지면적 4,062m ²
사 업 비	379억원(보상비 148, 공사비 224, 부담금 등 7)
시설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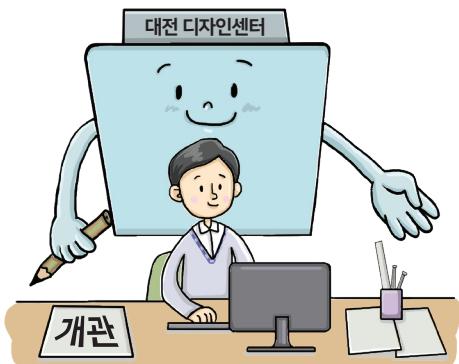
구 분	면적(m ²)	주 용 도
합 계	15,386	
지하1~2층	4,768	기계장비, 전기실, 주차장, 창고
지상1층	1,513	지원시설(은행 등), 로비, 주차장, 하역공간
지상2층	1,496	지원시설(근린생활시설 등), 회의실, 관리사무실
지상3~6층	6,814	산업시설(44개 공간), 비즈니스라운지, 휴게공간
지상7층	795	체력단련실, 샤워실, 식당, 옥상정원

기대효과

- 원도심 지역에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
- 첨단기업과 주민편의시설 입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투자유치과 ☎ 042-270-3756 / 준공일 2020년 3월

04 「대전디자인센터」 개관



▲조감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중부권 디자인산업을 선도하고 육성시킬 대전디자인센터를 개관하여 디자인기업의 역량 강화와 인력양성, 디자인 혁신으로 기업 성장을 견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2020년 2월 개관

사업개요

명 칭 (재)대전디자인센터 / 시 출연기관
설립 일 2019. 9. 23.
조직인력 1원장, 3팀, 10명
소재지 대전 유성구 테크노9로 35(탑립동)
건축규모 부지 7,090m ² , 연면적 4,355m ² / 지하1층, 지상4층 - 주요시설 : 전시·세미나실, 창업보육실, 스튜디오, 교육실, 프로젝트실 등
주요기능 지역 디자인산업 진흥 및 기업역량 강화 - 디자인기업 육성,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 기술과 디자인 융합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등

기대효과

- 디자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인프라와 지원체계 운영으로 디자인산업 활성화
- 디자인 전주기 지원으로 기업의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05 「바이오 메디컬 분야 규제자유특구」 지정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연구임상단계에서 전국에서 하나 뿐인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만 검체확보 가능 / 확보가 매우 어려움 신의료기술평가유예를 통한 시장 선집입 기간이 짧고(1년) 논문 수준의 까다로운 임산문현 요구 / 참여율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체유래물은행의 공동운영 플랫폼 구축으로 신속한 검체확보는 물론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시장 선진입 허용기간 연장 및 평가유예 신청 서류 간소화 ⇒ 빠른제품 출시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사업개요

- 검체 확보 플랫폼을 통한 신기술 체외진단기기 개발(4개사)
 -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검체확보, 신기술 제품화, 임상-인허가 코디네이터 등)
- 체외진단기기 상용화 검증 패스트 트랙(17개사)
 - 신의료기술평가 2년간 유예(시장 선진입 허용 기간 1년연장)
 - 평가유예 신청 서류 간소화(임상결과보고서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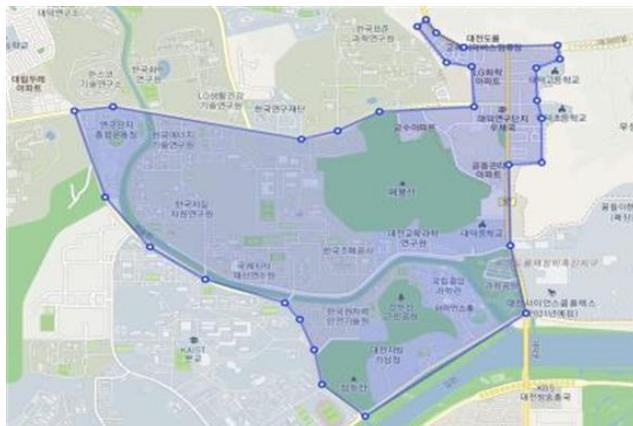
기대효과

- | 경제적 효과 | 2023년까지 생산유발 1,029억원, 고용유발 800여명, 바이오 기업들의 규제 지불 비용 감소
- | 사회적 효과 | 민간 비즈니스 모델 창출, 국민건강 증진 기여
- | 제도적 효과 | 제품개발 기간 단축(1년2월) ⇒ 신기술이 적용된 우수제품 출시로 글로벌 경쟁력 우위 선점 전국확산 모델화

06 「Re-New 과학마을」조성

무엇이 조성되나요?

스마트 과학관광	과학관광시스템(대덕특구 통합 과학관광시스템 / 전용앱 개발) OpenLab조성(6개 출연연, 기술체험관 조성)
스마트 연구소	스마트 쉼터(태양광패널, 핸드폰 충전, 경관조명 등) 스마트 가로등(CCTV, 자동조도, 생활정보 제공)
스마트 교통	스마트 공원(한스코 1개소, 스마트 벤치) 첨단 버스쉘터(소형 10개, 냉·난방, 공기청정, 스마트벤치) 자율주행셔틀 운영(국립중앙과학관 내 지정노선 주행)
스마트 안전	긴급출동시스템(신호연계 LED 정지선 등 / 유성소방서) 생활안전시스템(IOT 기반 생활안전 및 헬스케어 / 장방경로당)



사업개요

|위 치| 유성구 가정동·구성동·도룡동 일원 2.46km² / 둘레 7.2km

※ 둘레 7.2km : 과학공원4거리~연구단지4거리~연구단지운동장3거리~KAIST운동장3거리

|사업기간| 2019. 12. ~ 2020. 6.

|사 업 비| 4,000백만원(국비 2,000, 시비 2,000)

기대효과

- 과학과 문화가 융합된 스마트시티 조성으로 과학도시 위상 제고
- 대덕특구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실증·고도화 및 적용·확산

과학산업과 ☎ 042-270-0334 / 준공일 2020년 6월

07

「노동자권익상담실」 설치 운영



노동권익 상담실은?

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임금, 징계하고, 근로시간, 고용보험, 기타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권익 침해에 대해 노동전문가가 배치되어 성실하게 상담해 주고 해결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자?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대전지역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로 사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피해 구제와 보호가 필요하거나 노동 관련 법적인 내용 등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사람

사업개요

- | **상담실** | 2곳 / 노동권익센터 내(대흥동), 둔산동근로자복지관 내(둔산동)
- | **사업지원** | 2명 배치 / 상담전문가(노무사 등)
- | **시비지원** | 연간 상담전문가 인건비 시비 지원
- | **지원내용** |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동 전문상담사를 2곳에 2명을 배치하여 노동자의 부당한 대우와 피해 구제를 도와주고 보호하는 서비스 제공

기대효과

취약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구제를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일자리노동경제과 ☎ 042-270-2692 / 시행일 2020년 1월

08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시행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는?

여성농업인의 여가 및 문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카드로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NH농협을 통해 카드를 발급 받아 연간 20만원 한도 내에서 안경점, 미용실, 영화관 등 29개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을 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세대주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사업개요

| 사업량 | 2,500명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서 다소 유동적

| 사업비 | 500백만원(시비 300, 구비 150, 자담 50)

| 지원금액 | 연 20만원/인(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 / 안경점, 영화관, 종합스포츠 센터 등 29개 업종(유흥업소 제외)

기대효과

과중한 농작업과 가사, 육아 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 문화교류 활동 제공 등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농생명정책과 ☎ 042-270-3793 / 시행일 2020년 1월

2020년

대전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5

편리한 대전

- | | |
|------------------------------|----|
| 01 「바우처 택시」 도입 | 50 |
| 02 「수소 저상 시내버스」 도입 | 51 |
| 03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 | 52 |
| 04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 53 |
| 05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간 광역도로 개설」 | 54 |
| 06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 온라인으로 확인 | 55 |
| 07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시행 | 56 |
| 08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개선 | 57 |

01 「바우처 택시」 도입

바우처택시란?

평소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교통약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이용자)가 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 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지칭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종 전

-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대상차량
 - 사랑콜(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 82대
- 비휠체어 교통약자 대상
 - 나눔콜(택시차량으로 교통약자전용) 90대

변 경

-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대상차량
 - 사랑콜(휠체어 탑승설비 장착차량) 82대
- 비휠체어 교통약자 대상
 - 나눔콜(교통약자 전용 택시) 90대
 - 바우처택시(교통약자 비전용 택시) 150대

※ 회원등록 및 이용문의 :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1588-1668 / 042-612-1010)

사업개요

사업량 150대 도입(1분기 60대 운영후 확대검토)
사업기간 2020. 1월~12월
사업비 2,144백만원
이용대상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
이용요금 기본 1,000원(3km), 추가 440m·107초당 100원
사업내용 바우처택시 차량이 교통약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이용자)를 서비스하면 市에서 이용요금의 일정 부분(일반택시요금과 특별교통수단요금과의 차액)을 바우처택시 사업자에게 지원

기대효과

- 특별교통수단 추가 공급을 통한 대기시간 감소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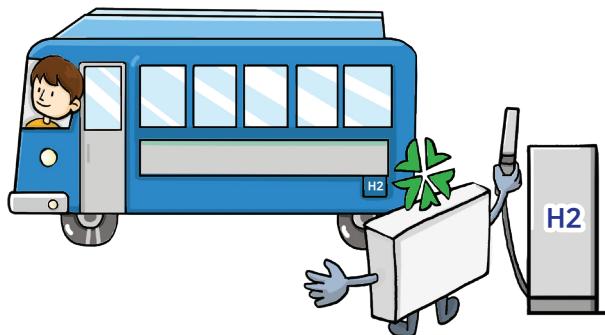
02 「수소 저상 시내버스」도입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 11m / 출입문 2개(승차1, 하차1)
- 승차정원 47명 / 실제 약 65명
- 승차인원이 적고 승·하차에 불편
- 11m / 출입문 2개(승차1, 하차1)
- 승차정원 48명 / 실제 약 65명
-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도움
- 소음 및 진동이 적어 승차감 우수



사업개요

| 사업량 | 10대 도입

| 사업기간 | 2020. 하반기

| 사업비 | 6,300백만원(국비1,960, 시비2,240, 자부담1,100, 기타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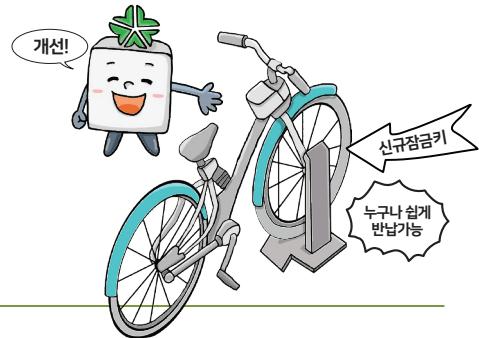
기대효과

-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
- 소음과 진동이 적어 승차감이 좋아 시내버스 이용 시민 만족도 제고 및 시민들의 차량 다양화 기대 부응

03 시민공영자전거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

추진배경

매년 타슈 이용률 감소와 운영시스템 노후에 따른 이용 불편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타슈' 무인대여시스템 개선 필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여·반납장치 자전거에 설치 키오스크,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방식 대여 신용카드, 소액결제, 교통카드 통신 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여·반납장치 거치대에 설치(자전거 경량화) 키오스크,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방식 대여 신용카드, 소액결제, 교통카드, 온라인 간편 결제 통신장애 근원적 해결, 홈페이지 개선 공유자전거, 전기자전거 대여시스템 개발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무인대여소 261개소, 거치대 3,433개, 자전거 2,895대

| 사업기간 | 2019년 ~ 2021년

- '19. 1. ~ '20. 6. : 시스템개선 용역 및 시범구축(5개소)
- '20. 7. ~ '21. 12. : 무인대여 시스템개선(대여소 261개소)

| 사업내용 | 대여·반납 간편화, 자전거 경량화, 교통환승 연계, 결제방식 다양화 등

- 대여·반납 간편화, 자전거 경량화, 온라인 간편 결제 등 결제방식 다양화
- 홈페이지 개선, 모바일 앱 개발, 공공교통 환승 연계, 공유·전기 자전거 도입 방안 마련

| 총사업비 | 4,510백만원 / 용역 및 시범구축 510, 무인대여소 시설개선(261개소) 4,000

기대효과

- 공영자전거 이용편의 증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
- 공공교통 연계 이용률 향상으로 도심 교통정체 및 대기환경 개선 기여

건설도로과 ☎042-270-5922 / 시행일 2020년 7월

04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광역알뜰교통카드란?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로 최대 30%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로 편리한 대중교통 플랫폼(App)을 통해 개인 맞춤형 교통·환경·건강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음



사업개요

- | 사업대상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도시철도 이용자
- | 사업내용 |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보행·자전거 이용 시 마일리지 제공
- | 이용방법 | 광역교통알뜰카드 신청(후불) ⇒ 마일리지 앱 설치(휴대폰) ⇒ 출발 · 목적지 설정
⇒ 이동(마일리지 자동 적립)

기대효과

대중교통 이용자 교통비 절감과 보행 및 자전거 이용 장려

버스정책과 ☎ 042-270-5804 / 시행일 2020년 1월

05 「계룡 신도안 ~ 대전 세동간 광역도로 개설」

무엇이 달라지나요?

계룡 신도안 ~ 대전 세동간 광역도로를 개설하여 시민에게 통행거리 단축(현충원~계룡시청 L=18.6km→16.6km) 등 교통편의 제공



사업개요

- | 위치 | 계룡시 신도안 ~ 유성구 세동 일원
- | 사업규모 | L=1.96km, B=20m(대전시 0.72km, 계룡시 1.24km)
- | 사업기간 | 2017. 1 ~ 2020. 12.

기대효과

- 광역도로 개설에 따른 간선도로 기능을 제고하고 계룡시 주최 세계軍문화엑스포 등 주요 행사시 발생되는 교통정체 해소
- 지역간 통행거리 단축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주민 교통편의 증진

건설도로과 ☎ 042-270-5903 / 완공일 2020년 12월

06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 온라인으로 확인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 온라인으로 확인은?

시 홈페이지의 「OK예약서비스」에서 공공 시설 이용 예약 시, 법정할인대상자는 증빙 서류 제출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감면대상을 확인 후 감면된 요금으로 온라인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서비스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요금 감면대상 증빙서류를 현장에 직접 제출한 후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없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으로 감면대상 확인 후 감면된 요금으로 온라인 결제 또는, 현장에서 모바일로 감면자격 확인 후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

사업개요

| 적용가능 법정할인대상자 |

16종(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기기증자, 만65세 이상자,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의사자의 유족, 의사자 및 그 가족, 18세미만인 3자녀 이상 가족구성원, 자원봉사자마일리지증 소지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 사업비 | 178백만원(국비 178백만원)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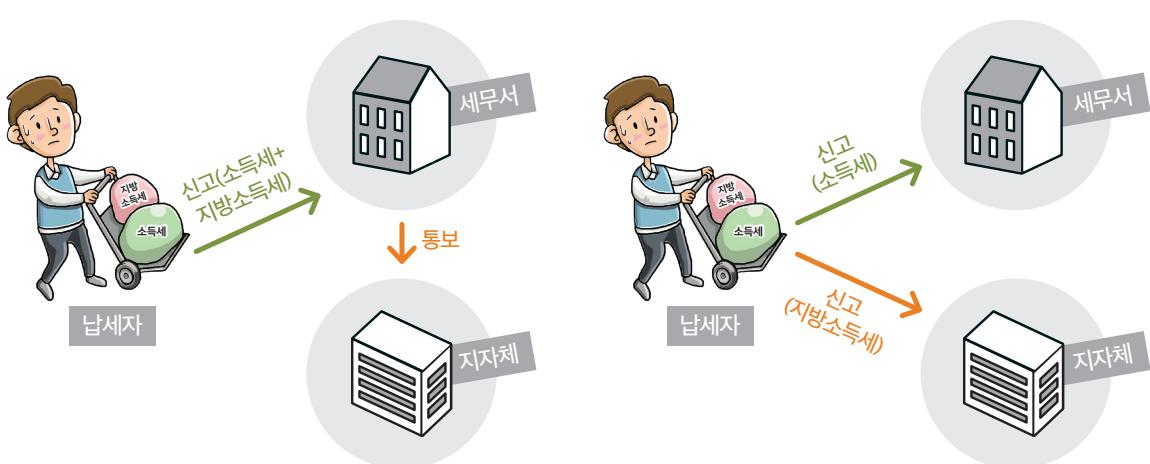
- 감면대상자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성 향상
- 개인의 민감정보 노출 방지를 통한 사생활 보호에 기여

07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 동시신고 국세청은 신고내역을 지자체에 통보 지자체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여부, 납부세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통보자료에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자는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 지방소득세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각각 신고 국세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운영가능



사업개요

- 적용대상 : 종합(6종)·양도·퇴직소득세 등 8종
- 시행시기 : 2020.1.1. 이후 신고·부과분

기대효과

- 지자체의 자율적인 지방소득세 운영을 통한 과세자주권 확보 및 재정분권 구현
- 지자체에 직접 신고함으로써 시민의 자치의식 제고로 성숙한 지방자치 실현

세정과 ☎ 042-270-4263 / 시행일 2020년 1월

08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개선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 주택유상거래 시 단순누진세율		• 6억 초과~9억 이하 구간 세율 세분화	
- 6억 이하 : 1%		- 6억 이하 : 1%	
- 6억 초과~9억 이하 : 2%		- 6억 초과~9억 이하 : 1.01~3%	
- 9억 초과 : 3%		- 9억 초과 : 3%	
구 분	현 행	개 정	
	세율	납부세액	세율
주택 유상 거래	7억	▶ 2%	1.67%
	7.5억	2%	2%
	8억	2%	2.33%
		14,000천원 15,000천원 16,000천원	11,690천원 15,000천원 18,640천원
			(감소) 2,310천원 변동없음 (증가) 2,640천원
납부세액	증감		



사업개요

- | **개정이유** |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은 단순누진세율로 6억 원, 9억 원을 일부 초과하는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거래가격을 임의조정(허위신고)하여, 세율 변동구간 직전에 거래가 집중되고 있음(문턱효과)
- | **개정내용** | 문턱효과 해소를 위해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구간은 세율 세분화(1.01~3.0%)
- | **시행시기** |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기대효과

- 세율변동 구간에서 발생하는 거래집중 현상 개선
-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납세를 회피하는 사례 방지

2020년

대전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6

안전하고 깨끗한 대전



- | | |
|---|----|
| 01 「대전시민 안전종합보험」시행 | 60 |
| 02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제정 | 61 |
| 03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 62 |
| 04 「삼성119안전센터」재건축 | 63 |
| 05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 개정 | 64 |
| 06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및 결과보고 기간 단축 | 65 |
| 07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66 |
| 0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 67 |
| 09 「대전천 국가하천」 승격 | 68 |
| 10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안내 전화」 운영 | 69 |
| 11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 확대 | 70 |

01

「대전시민 안전종합보험」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요?

대전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로 인적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종합 보험'이 '19. 12월부터 시행



사업개요

| 보장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포함)

| 보장기간 | 2019. 12. 9. ~ 2020. 12. 8.(매년 갱신예정)

| 보장내용 |

구 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대전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	대전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신체장애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대전광역시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신체적, 재물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대인 1,000만원 대물 10,000만원
사고 의료비 지원	재난 및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 수술, X선 검사, 보철기구를 포함한 치과 치료, 구급차, 입원, 장례비 등이 발생한 경우	1인당 200만원 한도 (방문 외국인 인당 100만원)

| 절 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대전시민이면 자동가입

| 청구방법 | 사유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기대효과

폭발, 화재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고에 대해 시민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안심사회 구현

안전정책과 ☎ 042-270-4932 / 시행일 2019년 12월 9일

02

「대전광역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례」 제정



조례제정 이유?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변 경

없음

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각 기관별 체험 위주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기관 지원 근거 마련

사업개요

- 안전문화운동추진 대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안전 및 재난관련 기관, 단체 등으로 구성하여 분과협의회 운영
- 안전교육지원센터에 관하여 규정(안 제10조)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전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하여 규정(안 제11조)
 -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사업 추진 근거 마련

기대효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운동의 정책추진 방식 등의 제도정비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기대

안전정책과 ☎ 042-270-4941 / 시행일 :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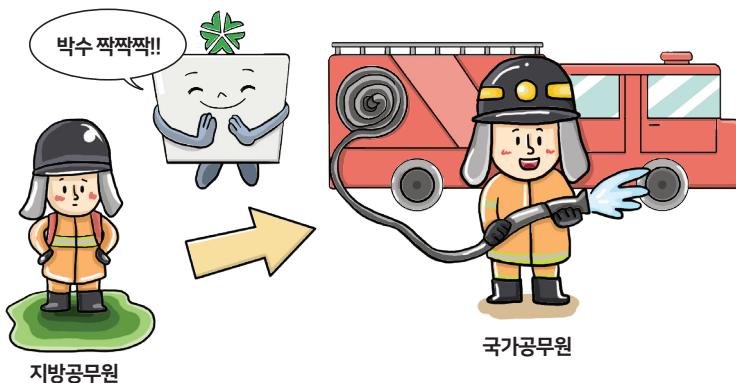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소방공무원이 지금까지 지방직이었나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소방공무원은 해당 광역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입니다. 이에 따라 시·도의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소방업무 수행(재난현장 포함)시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인력·장비·처우 등에 차이가 발생하여 소방서비스의 편차가 발생합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이를 해소하여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제’와 ‘지방분권’이란 양쪽 가치의 균형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종 전	변 경
신분	대전시 소속 지방공무원	대전시 소속 국가공무원
조직	실·국 지위의 소방본부	대전시장 직속의 소방본부
지휘권	대전시장의 지휘·감독	대형재난 시 소방청장 지휘 가능
재정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 지원	소방안전교부세 사업비·인건비 지원 가능
회계	소방특별회계(조례운영)	소방특별회계(법률 제정)



관련법안 처리경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결(2019.6.25.)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의결(2019.9.23.)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여야 합의 의결(2019.10.22.)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2019.11.13.) ▶ 본회의 의결(11.19.)

기대효과

- 국가 차원에서 소방인력 부족과 처우개선 문제 해결
- 국민전체에 균등하고 안정적인 소방서비스 제공

04

「삼성119안전센터」재건축

삼성119안전센터는 왜 재건축 하나요?

현재 동구 태전로 134(지번: 삼성동 322-4)에 소재한 삼성119안전센터 청사는 1976년에 준공된 건물로 43년이라는 시간동안 대전 도심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만큼 청사의 균열·누수·부식 등 노후가 심각해지고 주변 여건(소방대상물) 변화에 맞춘 소방인력·장비 확충으로 청사가 협소하게 되었습니다.

구도심의 중심과 이에 따른 소방수요의 밀집이라는 현 청사의 소방여건을 고려하여 현재의 청사위치에 재건축이라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임시청사가 마련되어 소방서비스 제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조감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 전

- 1976. 8. 26. 준공
-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990m²

변 경

- 2020. 12월 예정
- 지상3층 연면적 1,460m²

구분	계	1층	2층	3층
주용도		사무실, 차고	대기실, 식당	다목적실 등
면적	1,460.2m ²	527.4m ²	448.28m ²	484.52m ²

건축일정

- 현 청사 철거(2019년 11~12월)
- 신 청사 착공(2020년 1월)
- 신 청사 준공(2020년 12월 예정)

임시청사

| 위치 | 중구 동서대로 1466번길 4(선화동) 미화모텔건물
| 운영기간 | 2019. 10. 16.(수) ~ 신청사 입주 시

소방행정과 ☎042-270-6114 / 시행일 2020년 12월

05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일부 개정

개정이유

소방시설 불법행위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불법행위 신고자격 제한 규정 삭제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종 전	변 경
제2조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 신설 문화 및 집회시설 ~ 복합건축물(판매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제3조 신고적격	1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누구든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토록 개정
제6조 신고포상 지급	온누리상품권 또는 물품 최초 신고 시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지급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물품 지급	물품 삭제 1건당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지급
제8조 처리결과 통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신설에 따라 조례 부분 삭제	
제8조 심사위원회	포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및 지급여부 등 심사하기 위해 신설	
별지1호 불법행위신고서	제2조 신고대상 시설 근린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 목록 추가	

신고방법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신고대상 시설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 신고

소방본부 : 042-270-6133 동부소방서 : 042-270-1331 둔산소방서 : 042-270-1431
대덕소방서 : 042-270-1531 유성소방서 : 042-270-1631 서부소방서 : 042-270-1731

예방안전과 ☎042-270-6133 / 시행일 : 2020. 01. 01.

06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대상 확대 및 결과보고 기간 단축



개정이유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자체점검(작동기능·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
- 제천복합건축물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연면적이 5천㎡ 미만인 관계로 비전문가인 관계인이 셀프점검하여 부실점검이 이뤄졌고, 전문지식과 장비를 구비한 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확대요구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종 전	변 경
종합정밀 점검 실시 대상	1)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 대상물[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 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 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	1)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 대상물 2)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한다).<단서삭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 점검(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 점검(작동기능점검,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 7일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 등이 적합한지 점검(스프링클러설비, 연면적 5천㎡이상+물분무등소화설비)

기대효과

- 연면적 5천㎡ 미만인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대상을 전문 점검업자가 점검을 실시하여 소방 시설의 부실 점검 방지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 단축으로 소방시설 불량사항의 신속한 개선을 통해 소화시설 정상작동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 기여

07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2019.2.15.)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노후 차량(배출가스 5등급)의 도심지 운행을 제한 함

운행제한 대상차량 및 단속시기는?

대상차량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제한시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06:00~21:00 운행 제한

처분사항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운행차량 과태료 10만원 부과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차량운행제한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 사업규모 | 주요대도로 22개 지점(단속카메라 40대)

| 구축기간 | 2020년 상반기 중 구축 후 본격 시행

※ 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전에는 인력활용 비디오 단속



기대효과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의 운행제한을 통한 쾌적한 대기질 조성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도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단속 추진

미세먼지대응과 ☎ 042-270-5462 / 시행일 : 2020년 상반기중

0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

「대기관리권역」제도는 ?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이나 인접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하여 권역 특성을 고려한 오염관리 강화(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던 제도를 확대 시행)



구분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시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범위	전지역	옹진군 제외	28시군	전지역	전지역	6시군	14시군	3시	전지역	6시군	전지역	전지역	전지역	6시군	6시군	
비고	기준(수도권法)															확대(대기관리권역法)

※ 전국 4대 권역 중 우리시는 중부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

무엇이 달라지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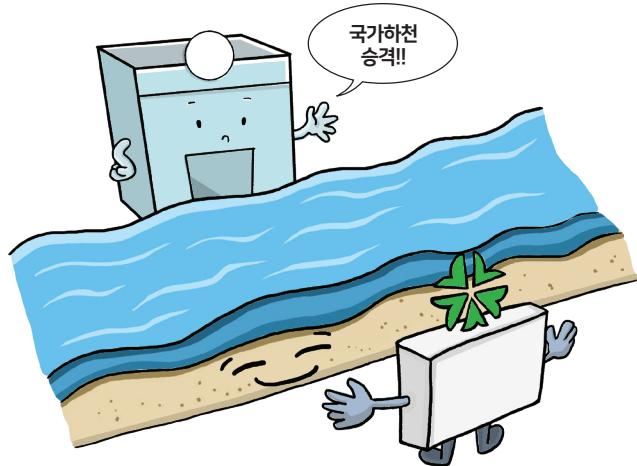
구분	종전	변경
관리체계	지자체별, 오염 원별 개별관리	권역 중심의 광역적, 체계적 대기질 관리 • 대기환경관리위원회 • 권역별 기본계획수립 • 시도별 시행계획수립
배출사업장 관리	배출농도 관리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 • 사업장설치 허가(최적방지시설 설치) • 배출총량 할당(5년) • TMS(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
경유차 관리	일반 배출허용 기준 적용	특정경유자동차(5등급) 관리 강화 • 배출허용기준 강화 • 기준 초과하는 차량 저공해조치 의무화 • 상시 운행제한 가능(조례) 경유차 사용제한 • 신규 택배차·통학버스('23.4.3.부터 시행)
기타 배출 관리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명령 가능 (조례)	특정건설기계 관리강화 • 저공해화 계획 수립 • 대규모 관급 공사에 저공해 건설기계, 차량사용 소규모배출원 행위제한 및 방지시설 설치명령(조례) • 목재연료 난방기기 • 세탁소 유기용제 • 음식점 대기오염 가정용보일러 인증 • 환경부 인증 받은 보일러만 제조 유통

주요내용

- 기존 배출사업장에서 조치해야 할 사항
 - 총량관리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TMS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총량허가증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설치하여야 함.

09

「대전천 국가하천」승격



국가하천이란?

<국가하천 지정요건 - 하천법 제7조> 유역면적의 합계가 5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서 인구가 20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는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하천

※ 대전천의 유역면적 88.84km², 인구 34만명(동구 20, 중구 12, 대덕구 2)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종 전	변 경
하천의 구분	지방하천 대전천	국가하천 대전천
하천관리청	시장	국토교통부장관(시장에게 위임)
재원	시비(市費)	국비(國費)
점·사용 허가권자	시장	국토교통부장관(대전지방국토관리청)

사업개요

| 위 치 | 중구 옥계교~대덕구 오정동(유등천 합류점), L=7.86km

| 향후계획 | 국가하천의 지위에 맞게 하천기본계획 변경수립 및 조성

※ 흉수 빙도 : 지방하천(100년) → 국가하천(200년)

기대효과

- 국가하천 정비사업비 및 재해복구비용 전액 국가 부담
- 국가하천 유지보수비용(약 10억원 / 年) 시비 절감

생태하천과 ☎ 042-270-5651 / 시행일 2020년 1월 1일

10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안내 전화」운영

불법유동광고물 자동안내 전화란?

수거한 불법유동광고물에 등재된 전화번호를 자동전화 안내시스템에 입력하여, 불법행위 사실을 60분, 40분, 20분 등의 단위로 안내전화 발송 실시

※ 5개 구청 동시 실시

무엇이 달라지나요?

구분	종 전	변 경
불법유동광고물 단속방법 획기적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명함형 전단지 등) 단속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단속 요원이 수거후 폐기 취약시간인 야간, 주말등에 행정인력의 단속정비로 쾌적한 환경조성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광고물 현장단속 한계극복 위한 24시간 지속가능 단속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유동광고물의 재발방지,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자동전화안내 시스템”을 도입 / 정비효율 극대화



사업개요

| 추진시기 | 2020. 1월부터 ~

| 대상 | 대전시 불법 유동광고물 전체 (5개구 전역)

| 시스템 운영 개요 |

※ 발신 시간대, 횟수등은 조정 가능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 자동 전화안내
시스템
전화번호 등록

▶ 1차 단속
1회/60분
발송

▶ 2차 단속
1회/40분
발송

▶ 3차 단속
1회/20분
지속 발송

▶ 미 발견시
종료

기대효과

일방적 단속이 아닌 광고주 의식 개선을 통한 불법행위 근절로 건전한 광고문화 조기정착 기여

도시경관과 ☎ 042-270-6451/ 시행일 2020년 1월

11

「공동주택 미니태양광」보급 확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이란?

아파트 및 경비실, 빌라, 다가구 등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

구분	종 전	변경
형식 및 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란다 거치형 • 300W급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란다 거치형 및 벽부착형 병행 • 325W이상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빌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빌라 • 아파트경비실, 다가구 주택 추가 포함



사업개요

| 사업규모 | 1,300가구

| 소요예산 | 1,045,200천원(804천원 × 1,300가구)

※ 가구당 지원액 : 설치비의 85%(683,400원)

⇒ 가구당 소요예산 : 804,000원(시비 603,000, 구비 80,400, 자부담 120,600)

(시비 75%, 구비 10%, 자부담 15%)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공동주택관리소(입주자대표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 해당지역의 참여업체와 계약체결 후, 관할구청에 신청

| 신청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미니태양광 설치계약서 사본(참여 업체에서 구청에 신청접수)

기대효과

- 정부정책 3020계획 추진 및 민선7기 약속사업 이행
- 가정에 태양광발전소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률 향상

에너지산업과 ☎ 042-270-0431 / 시행일 2020년 2월

2020년 대전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 행 일	2019년 12월
발 행 인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편집인	기획조정실장 김주이 정책 기획관 임재진
	기획팀장 권경민
	담당자 정진
발행처	대전광역시 http://daejeon.go.kr
전화	042.270.3012

일러스트 길문섭
인 쇄 처 참디자인주식회사 Tel 042.635.9771

비매품

2020년
대전시정
이렇게 달라집니다